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2020. 08  
www.lh.or.kr



NAVER 화성동탄2 국민임대 검색

HWASEONG DONGTAN2 A4-2BL



주 소 동탄2 신흔희망타운 거점홍보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오시는 길 열 차 : 동탄역 하차 후 도보 8분  
버 스 : 포스코더샵, 롯데캐슬 하차  
- 일반버스 : 150, 5-2, 9, 99, 701  
- 마을버스 : 19-1, 19-3, H3, 709-1, 81, H4  
- 광역직행 : M4130, 6001, 6003, M4434

청약신청은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세대유니트(견본주택)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전화 1600-1004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LH 홈페이지 <https://www.lh.or.kr>



생활은 감동  
미래는 탄탄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임대주택



경부고속도로 기흥IC와 SRT 동탄역 사이에 자리한 화성동탄2 A4-2블록은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생활은 감동이 되고 미래는 탄탄대ろ가 되는 도시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 DON G TAN A 2

## Contents

02 Contents	04 이미지투시도	06 지역조감도   교통망도	08 지구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10 단지조감도   단지배치도
12 Unit Plan	30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34 기타 편의시설	36 주요마감재시설내역	38 입주자 모집 공고문



## 보면 볼수록 살면 살수록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임대주택

서울 가는 길이 빠른 기흥IC와 SRT, GTX(예정) 등  
철도 교통망이 집중되는 동탄역 사이의 탄탄한 자리입니다.



기흥IC와 동탄역 사이에서 만나는 새로운 감동!  
동탄2신도시 A4-2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생활은 감동이 되고  
미래는 탄탄한  
살기 좋은 집입니다!**

HWASEONG DONGTAN 2 A4-2BL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임대주택



※ 상기 이미지 투시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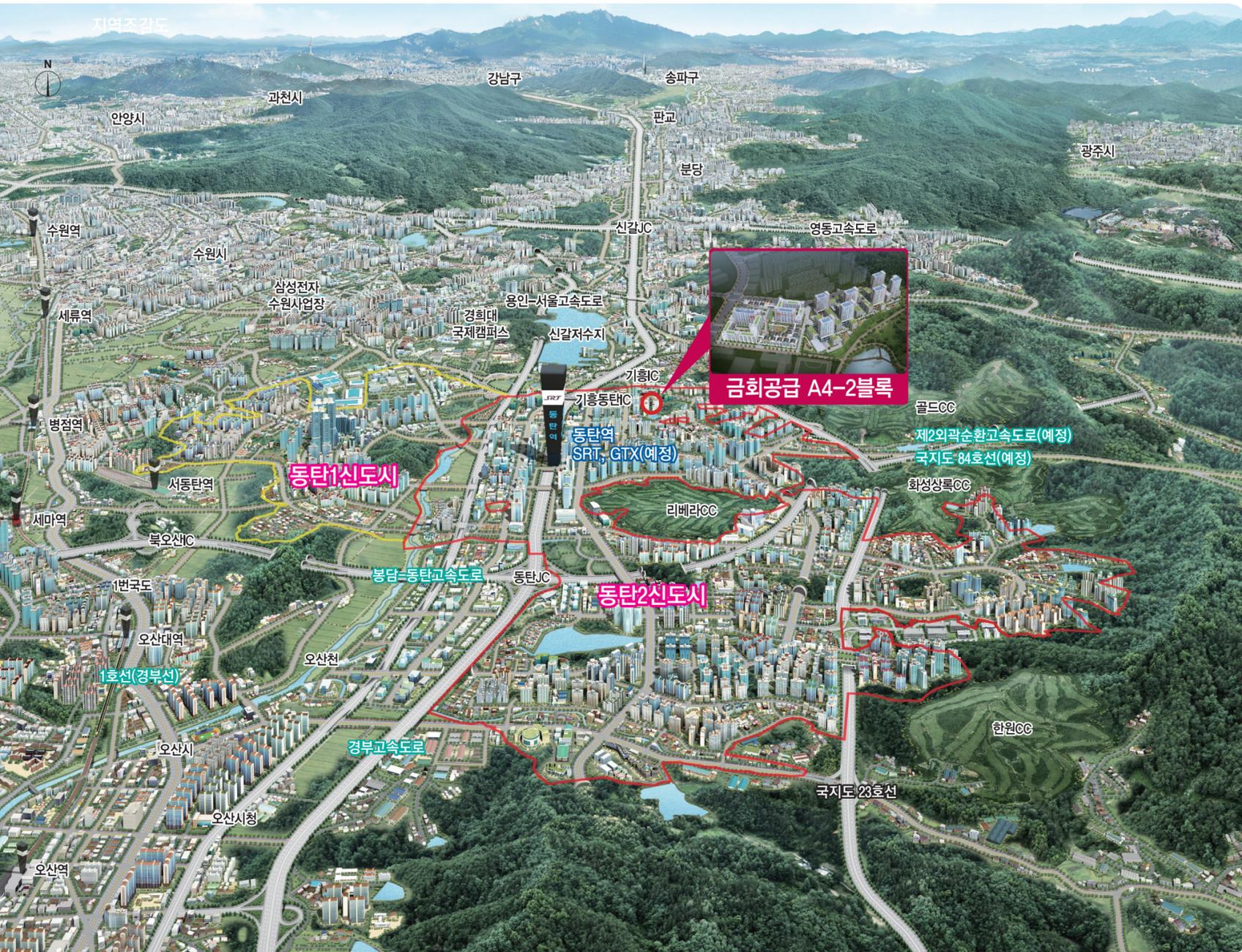


Best Location

교통만  
보아도  
탄탄대로

교통의 중심, 탄탄한 미래를 약속하다!

동탄2신도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신도시로 신도시 내 백화점(예정)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SRT·GTX·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탄탄한 미래가 열립니다.



생활의 속도를 높이는 SRT와 GTX

수서역까지 15분대 접근하는 SRT와 삼성역, 서울역은 물론 파주까지 이어지는 GTX-A 노선(공사중)



생활의 폭을 넓히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서울-세종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예정 등 서울과 전국을 탄탄대로 이어주는 광역교통망



생활의 밀도를 높이는 간선도로망

영덕-오산간고속도로(지방도 311호선), 국지도 84호선(예정) 등 세밀한 지역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인접지역 이동 편리성 확보

※ 상기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Best Site



이 름 만  
보 아 도  
감 동 감 탄

## 생활의 중심, 생활에 감동을 플러스하다!

백화점 등 상업시설은 물론 문화와 여가 시설이 집중되는 광역비즈니스복합체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선남숲공원이 곁에 있어 일상이 감동이 되는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구조감도 / 토지이용계획도



- |        |        |         |         |              |
|--------|--------|---------|---------|--------------|
| 단독주택   | 광역환승시설 | 공공공지    | 위험물처리시설 |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
| 연립주택   | 지원시설용지 | 광 장     | 소분      | 방송·통신시설      |
| 아파트    | 공공업무시설 | 하천, 저수지 | 전기공급시설  | 교통광장         |
| 근린생활시설 | 유통업무설비 | 체육, 저수지 | 수도용지    | 오수펌프장        |
| 업무복합용지 | 학 교    | 체육시설    | 미수      | 보행자도로        |
| 문화복합용지 | 공 원    | 의료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도 로          |
| 상업시설용지 | 원종녹지   | 의료복지시설  | 저유지     | 유 보 지        |
| 주상복합용지 | 경관녹지   | 종교시설    | 공원      | 시 험 럼        |
| 업무시설용지 | 연결녹지   | 커뮤니티센터  | 주차장     | 지구 계         |
|        |        | 사회복지시설  | 철도시설    |              |

※ 상기 지구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ream landscape

단지조감도 / 조경배치도

주소만  
들어도  
힐링되는 집

# 힐링의 중심, 일상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다!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영구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며 다양한 커뮤니티까지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영구임대주택 총 1,390세대

	28A	28B	37A	37B	37B-1
국민임대 1,031세대 [금회공급]	157세대	204세대	98세대	20세대	48세대 [주거약자]
	38A	46A	46B	47A	47B
	210세대	54세대	50세대	108세대	82세대
영구임대 359세대 [별도공급]	22A	22B	27A	27B	27B-1
	40세대	74세대	93세대	80세대	72세대 [주거약자]

※ 상기 단지조감도 및 조경배치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230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 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는 230동, 231동, 235동 23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관련기관(KT,SKT,LGU+) 협의 후 전파강도측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Unit Plan  
단위세대

# 28A

28A 157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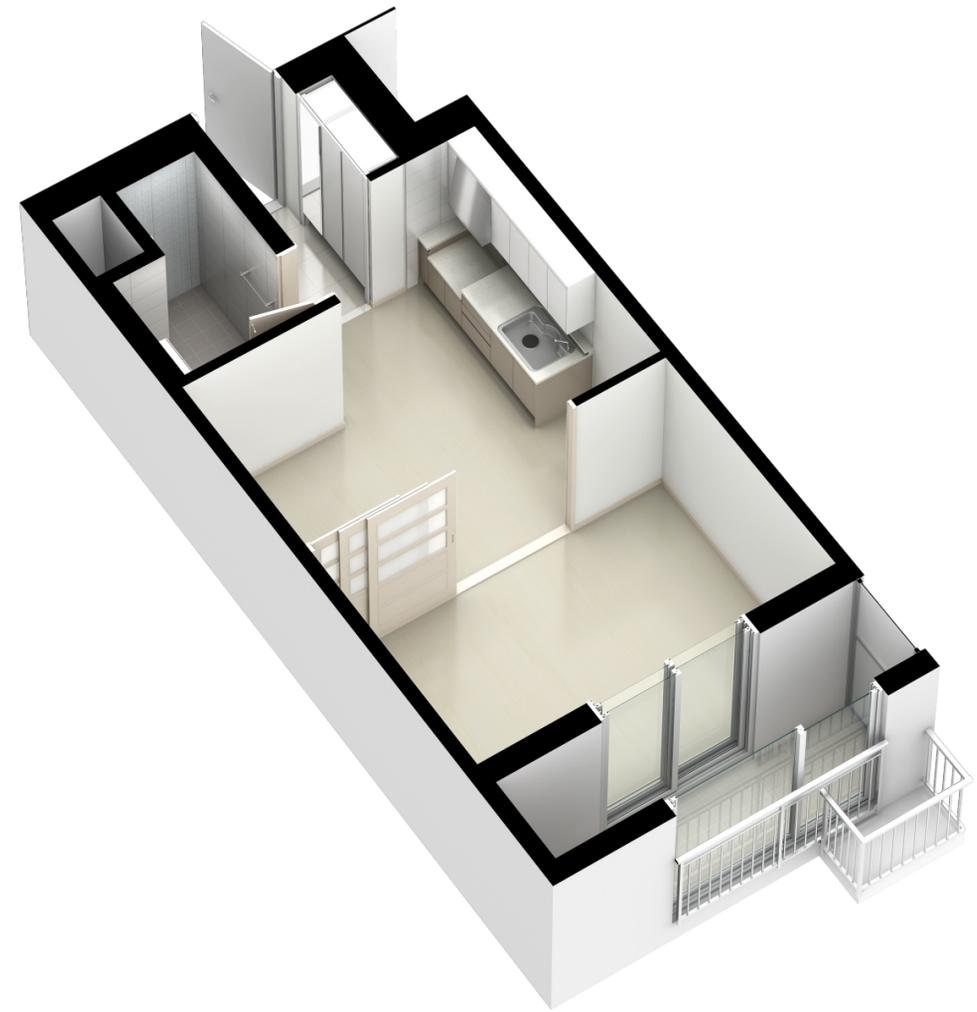
전용면적	28.0600㎡
주거공용면적	16.6871㎡
기타공용면적	3.0847㎡
지하주차장	20.3969㎡
<b>계약면적</b>	<b>68.2287㎡</b>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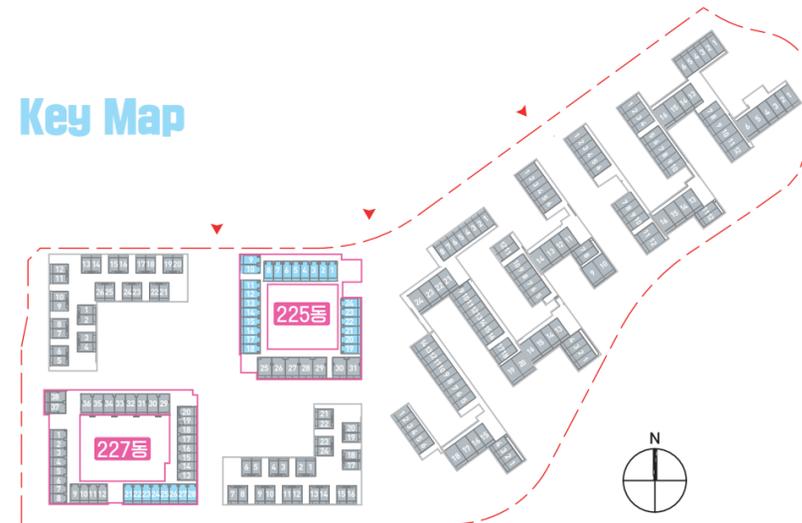
거실 / 침실	11.44㎡
주방	11.37㎡
욕실	3.10㎡
현관	1.96㎡
초과발코니	0.19㎡
<b>합계</b>	<b>28.06㎡</b>

서비스면적

발코니	6.30㎡
-----	-------



## Key Map



-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이므로 가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nit Plan  
단위세대

# 28B

28B 204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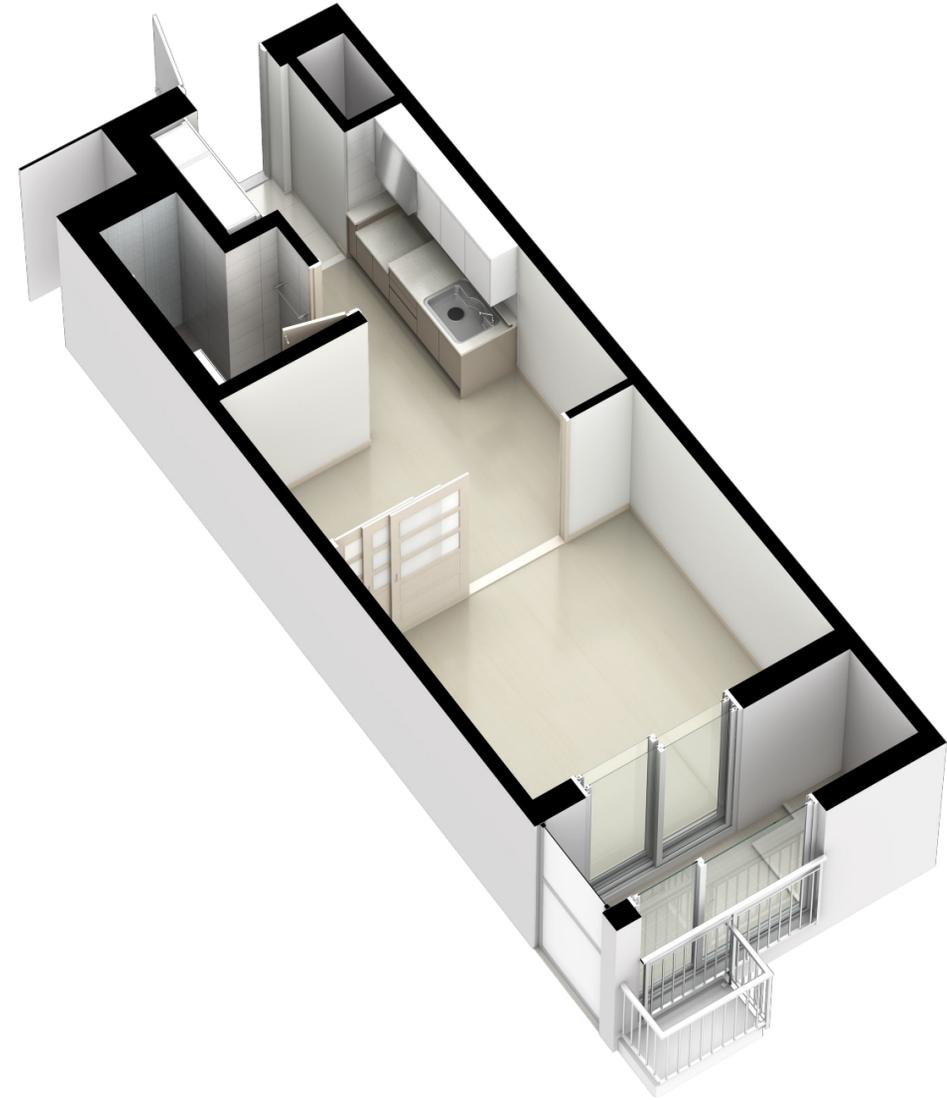
전용면적	28.1300㎡
주거공용면적	16.7288㎡
기타공용면적	3.0924㎡
지하주차장	20.4478㎡
<b>계약면적</b>	<b>68.3990㎡</b>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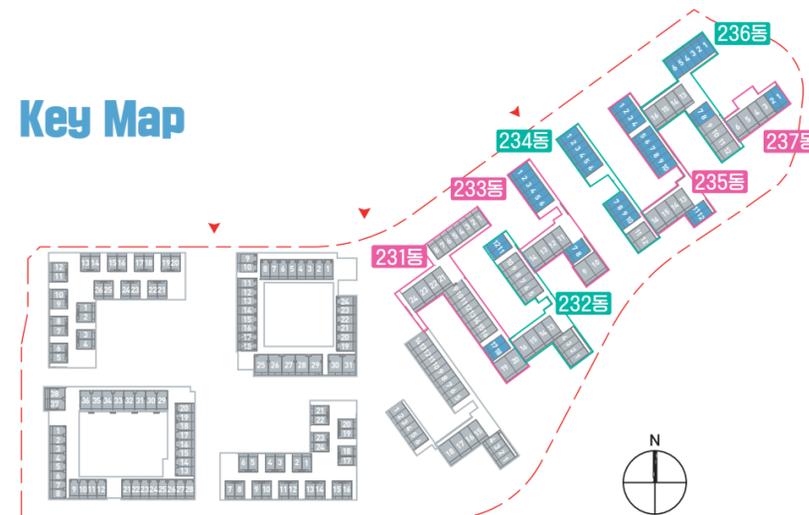
거실 / 침실	11.70㎡
주방	10.56㎡
욕실	3.14㎡
현관	1.95㎡
초과발코니	0.78㎡
<b>합계</b>	<b>28.13㎡</b>

서비스면적

발코니	5.40㎡
-----	-------



## Key Map



-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이므로 가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236동의 일부 세대는 북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Unit Plan  
단위세대

# 37A

37A 98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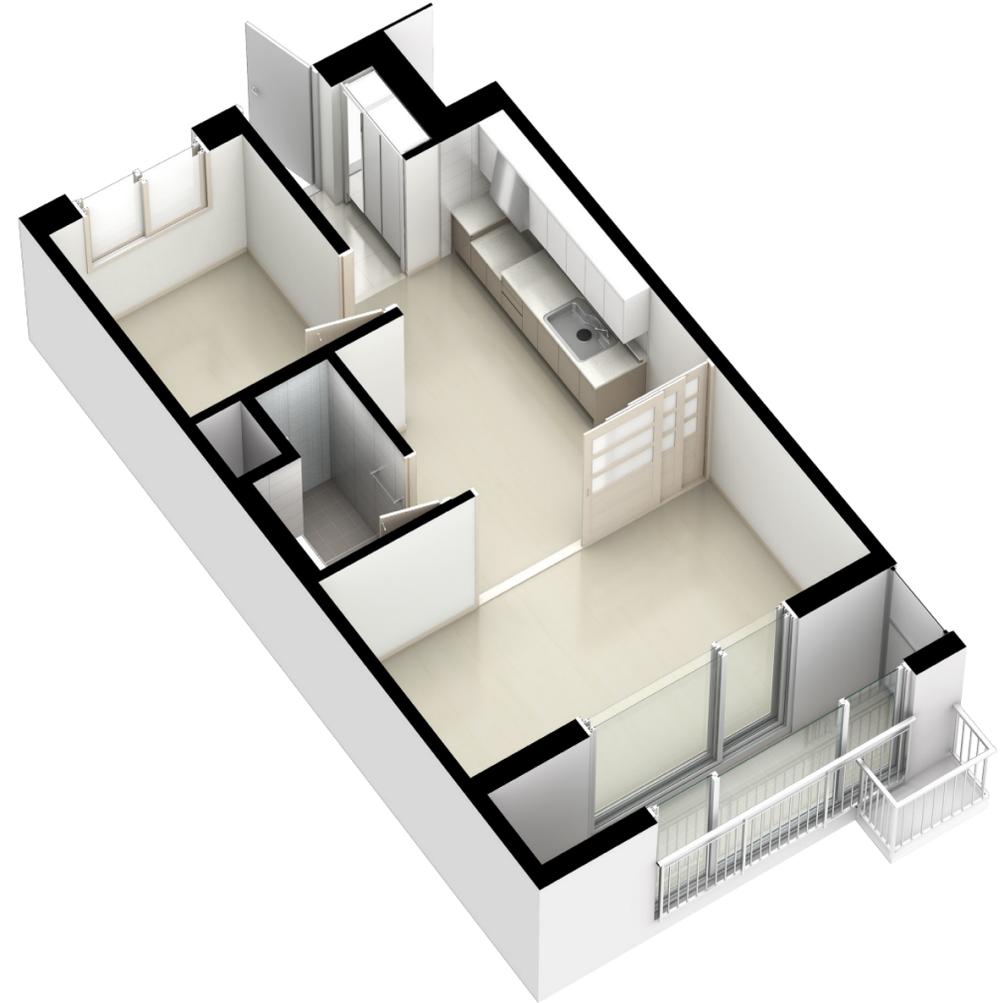
전용면적	37,820.0㎡
주거공용면적	22,491.4㎡
기타공용면적	4,157.7㎡
지하주차장	27,491.5㎡
<b>계약면적</b>	<b>91,960.6㎡</b>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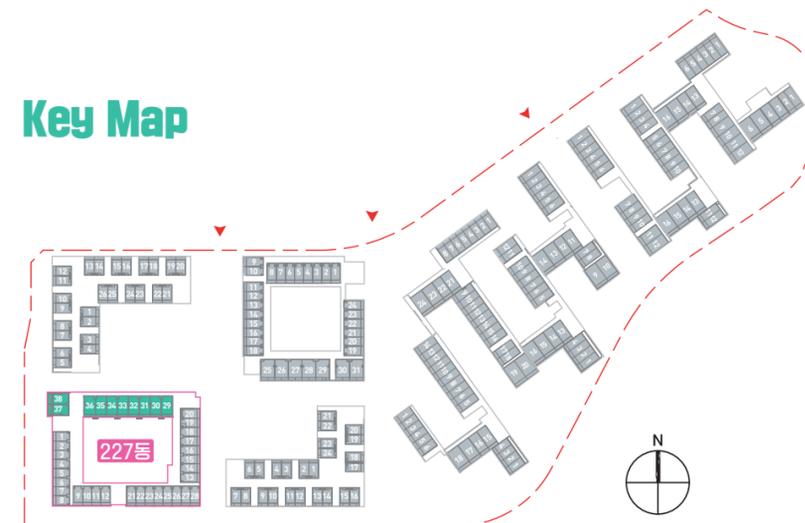
거실 / 침실	14.01㎡
침실 1	7.07㎡
주방	11.59㎡
욕실	3.08㎡
현관	2.01㎡
초과발코니	0.06㎡
<b>합계</b>	<b>37.82㎡</b>

서비스면적

발코니	7.65㎡
-----	-------



## Key Map



-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이므로 가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nit Plan  
단위세대

# 37B, B-1

37B 20세대

37B-1 [주거약자] 48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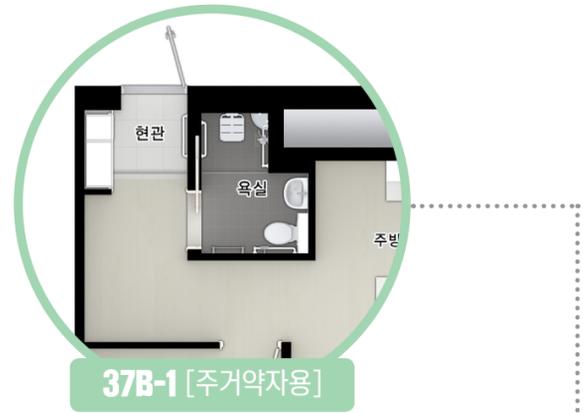
전용면적	37,990㎡
주거공용면적	22,592.5㎡
기타공용면적	4,176.4㎡
지하주차장	27,615.1㎡
계약면적	92,374.0㎡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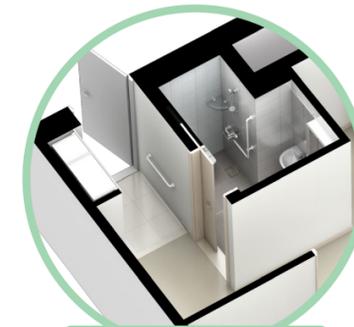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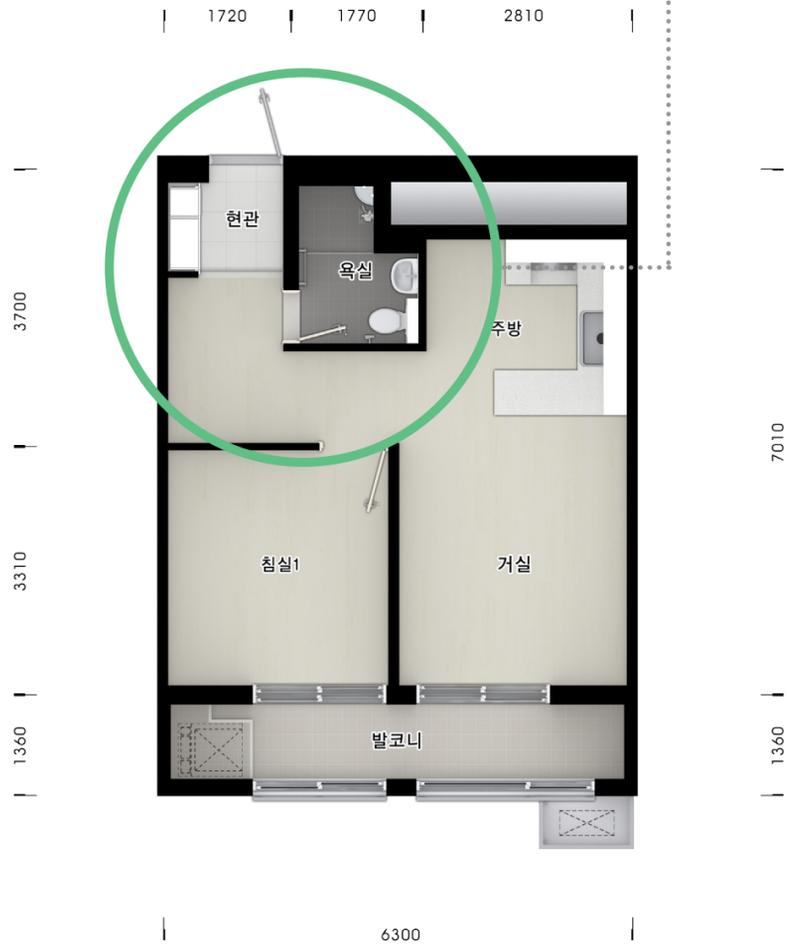
거실	9.80㎡
침실 1	9.48㎡
주방	7.47㎡
복도	6.22㎡
욕실	3.23㎡
현관	1.79㎡
합계	37.99㎡

서비스면적

발코니	9.35㎡
-----	-------



37B-1 [주거약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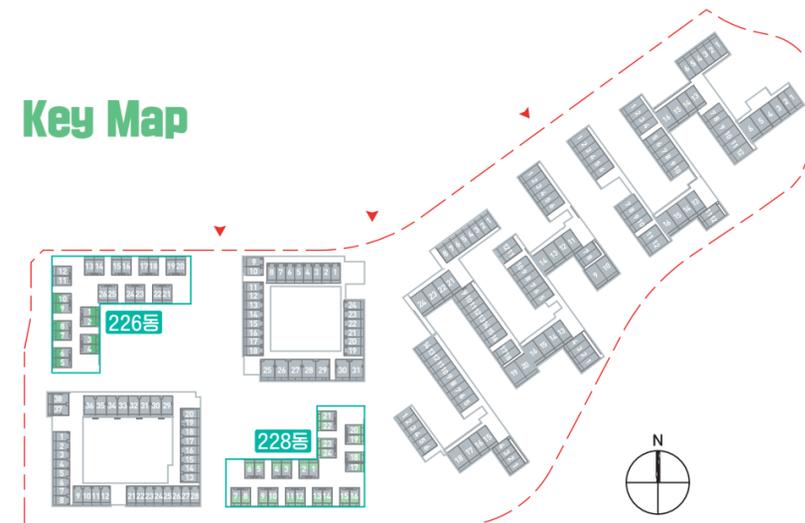


37B-1 [주거약자용]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 현관입구 안전손잡이
- 욕실 안전손잡이
- 욕실 미서기문

## Key Map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이므로 가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nit Plan  
단위세대

38A

38C 210세대

주택면적

전용면적	38.2900㎡
주거공용면적	22.7709㎡
기타공용면적	4.2094㎡
지하주차장	27.8331㎡
<b>계약면적</b>	<b>93.1034㎡</b>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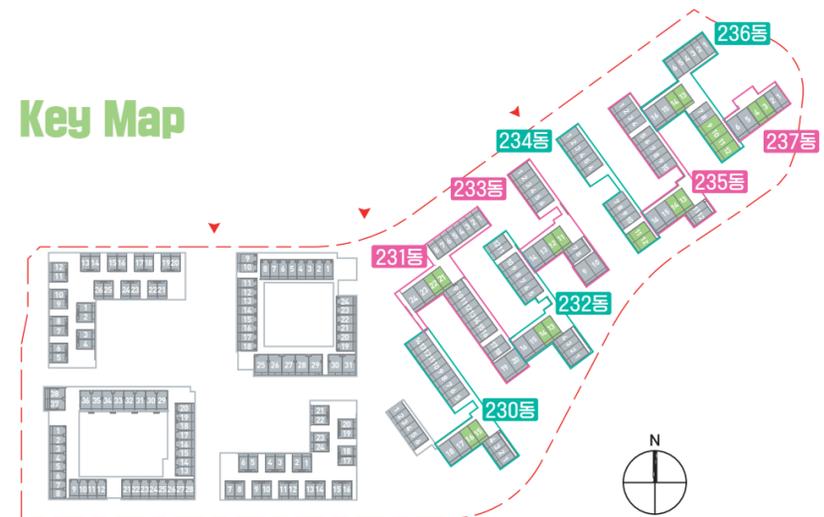
거실 / 침실	15.64㎡
침실 1	6.10㎡
주방	10.96㎡
욕실	3.08㎡
현관	1.73㎡
초과발코니	0.78㎡
<b>합계</b>	<b>38.29㎡</b>

서비스면적

발코니	7.20㎡
-----	-------



Key Map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이므로 가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nit Plan  
단위세대

46A

46A 54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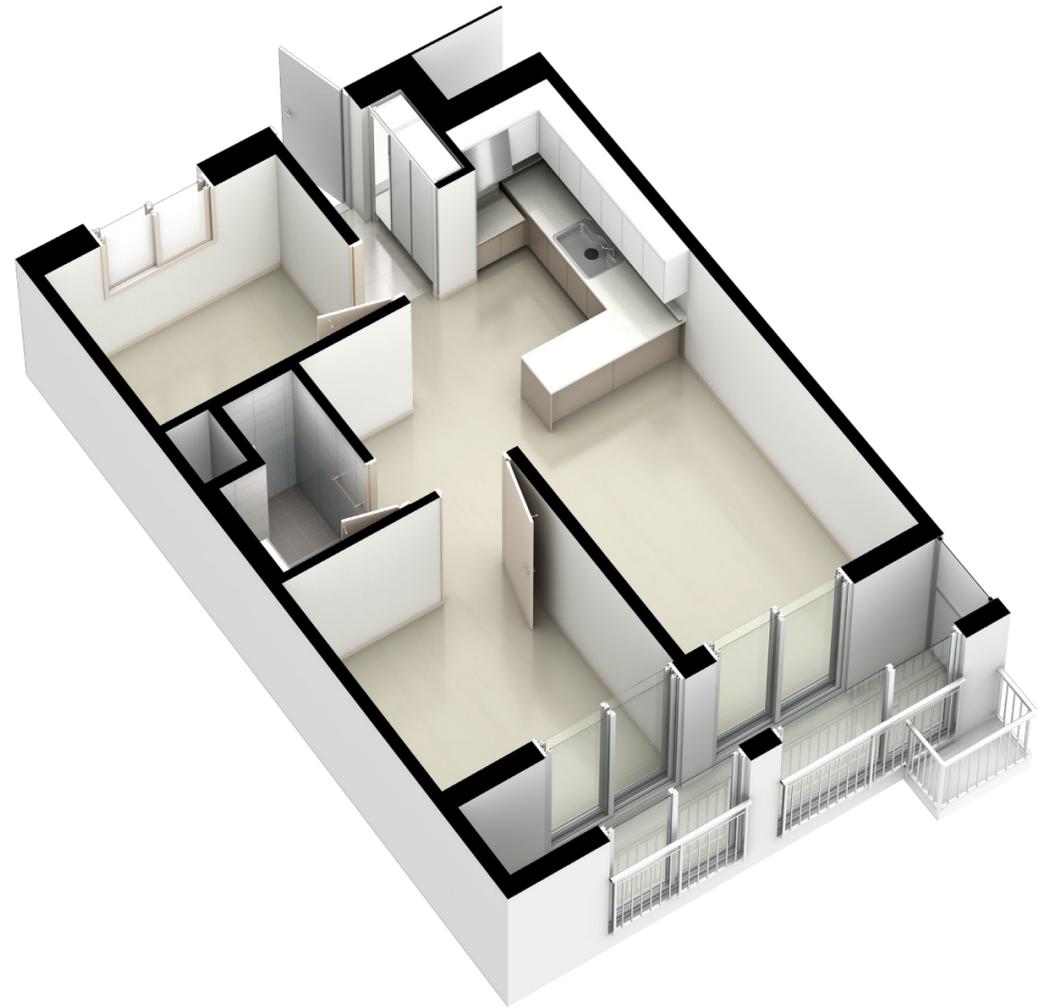
전용면적	46.7800㎡
주거공용면적	27.8199㎡
기타공용면적	5.1427㎡
지하주차장	34.0045㎡
계약면적	113.7471㎡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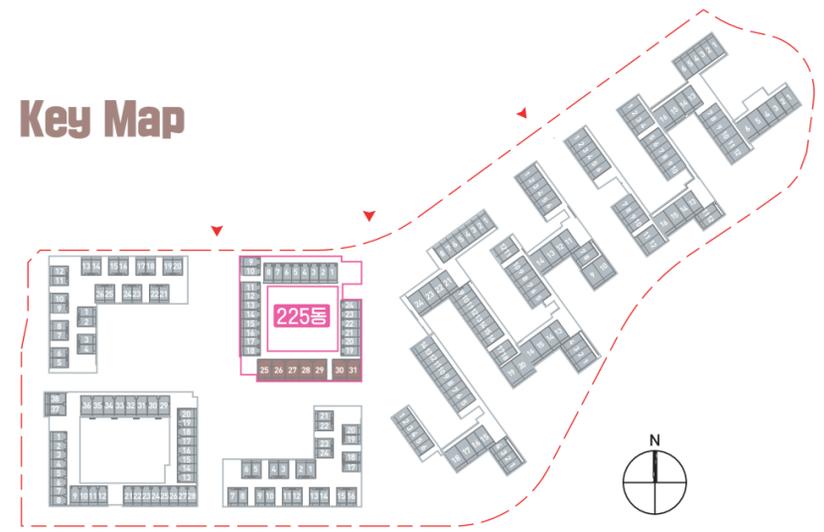
거실	9.80㎡
침실 1	9.47㎡
침실 2	7.56㎡
주방	15.62㎡
욕실	3.08㎡
현관	1.25㎡
합계	46.78㎡

서비스면적

발코니	9.35㎡
-----	-------



Key Map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이므로 가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nit Plan  
단위세대

# 46B

46B 50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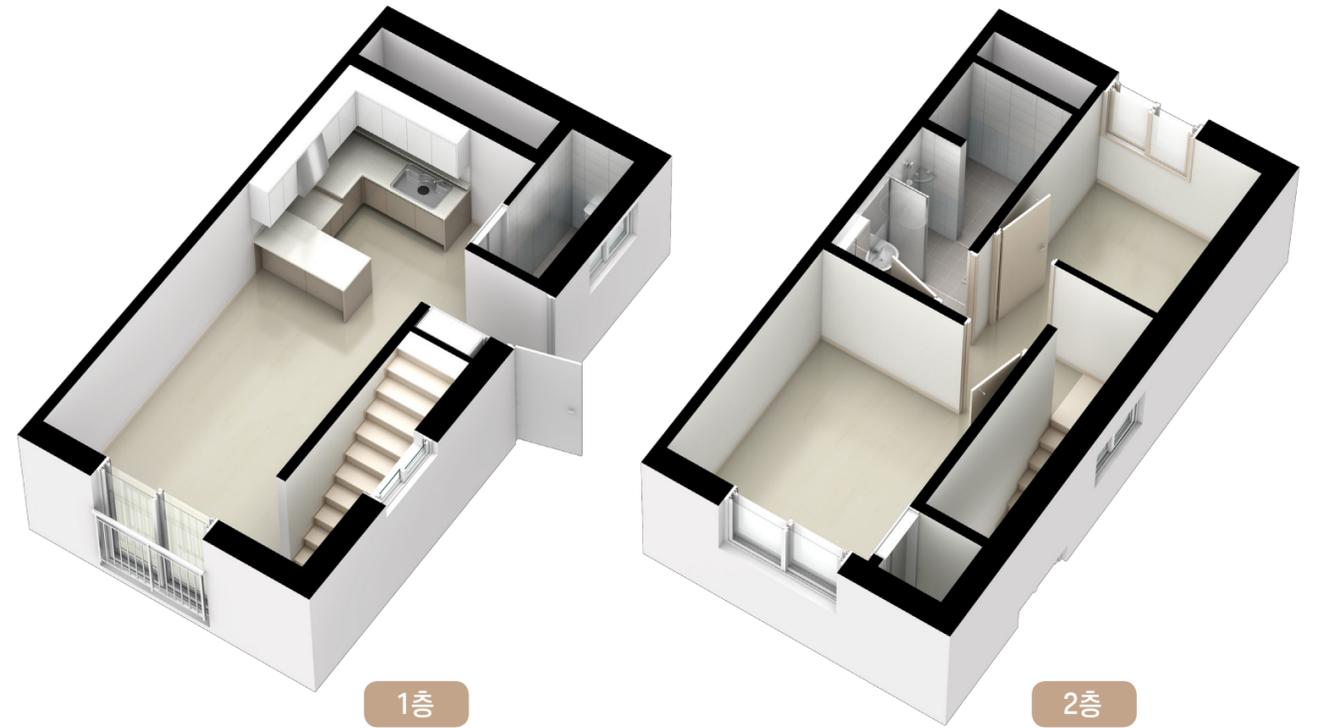
전용면적	46.8600㎡
주거공용면적	27.8674㎡
기타공용면적	5.1515㎡
지하주차장	34.0627㎡
<b>계약면적</b>	<b>113.9416㎡</b>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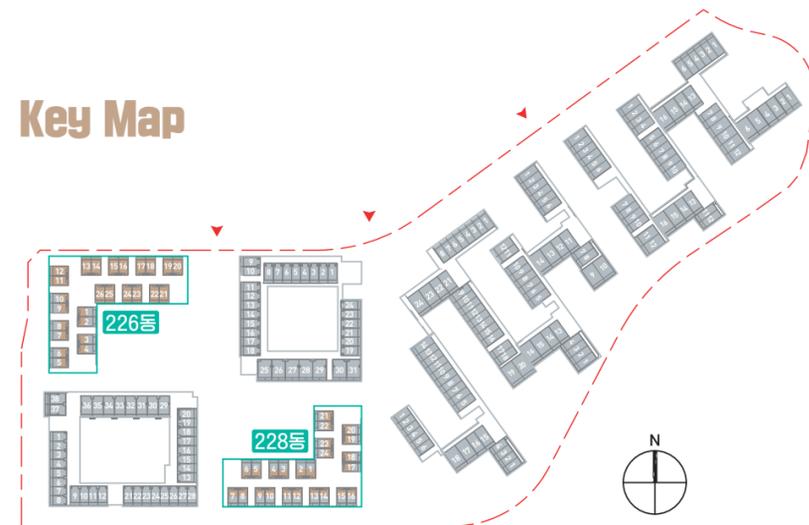
거실	8.52㎡
침실 1	7.74㎡
침실 2	6.49㎡
주방 / 식당	9.73㎡
2층 욕실	5.66㎡
현관	1.59㎡
1층 욕실	2.41㎡
복도	1.97㎡
내부계단	2.75㎡
<b>합계</b>	<b>46.86㎡</b>

서비스면적

발코니	11.44㎡
-----	--------



## Key Map



-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리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이므로 가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내 세탁기 설치는 2층 욕실에 설치 가능하며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대내 세탁기는 W7500이하만 설치 가능합니다.)
- ※ 226동 및 228동의 일부세대는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Unit Plan  
단위세대

47A

47C 108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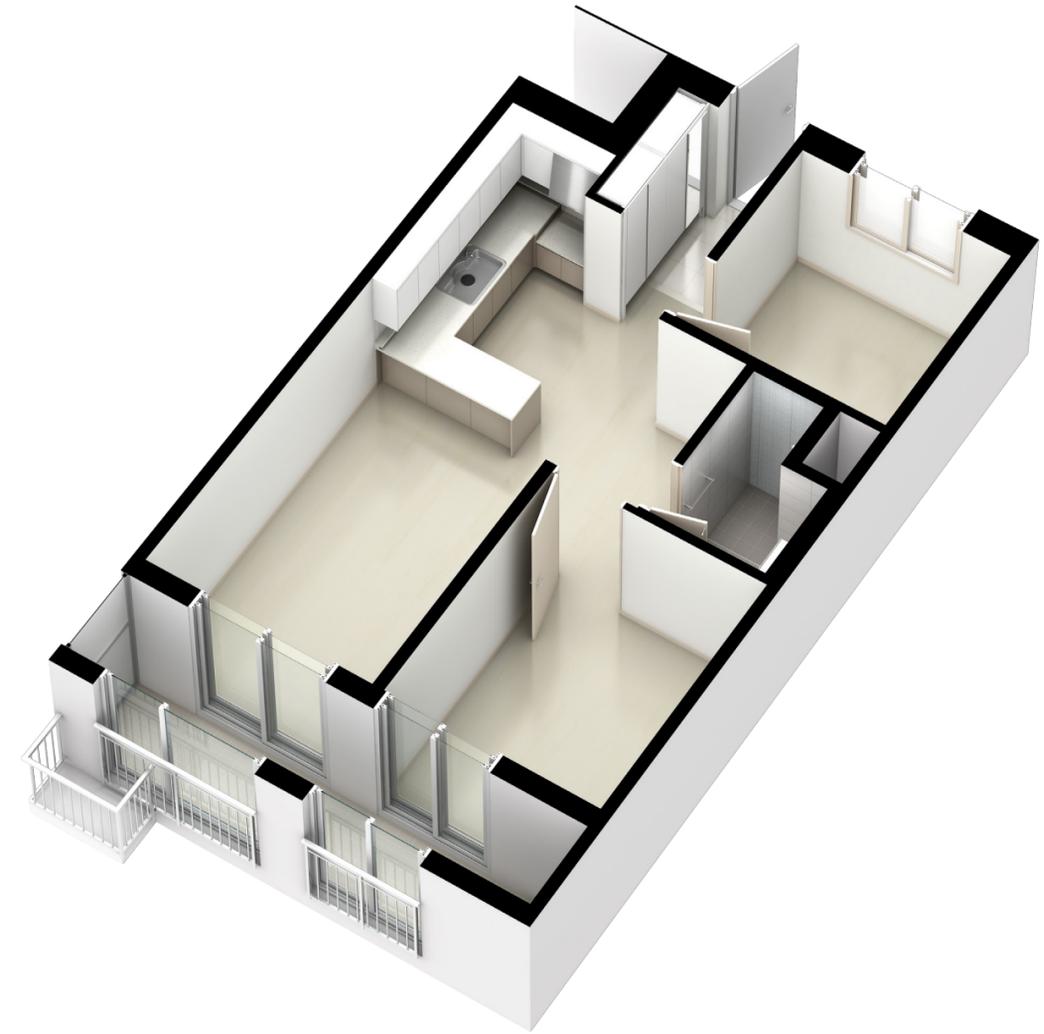
전용면적	47.6900㎡
주거공용면적	28.3610㎡
기타공용면적	5.2428㎡
지하주차장	34.6660㎡
계약면적	115.9598㎡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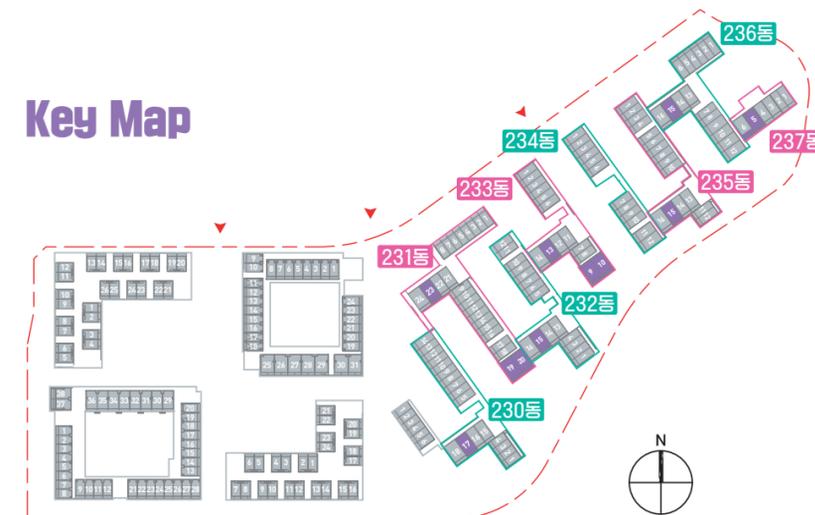
거실	10.20㎡
침실 1	9.52㎡
침실 2	7.49㎡
주방	14.50㎡
욕실	3.08㎡
현관	2.12㎡
초과발코니	0.78㎡
합계	47.69㎡

서비스면적

발코니	9.00㎡
-----	-------



Key Map



-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이므로 가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nit Plan  
단위세대

47B

47D 82세대

주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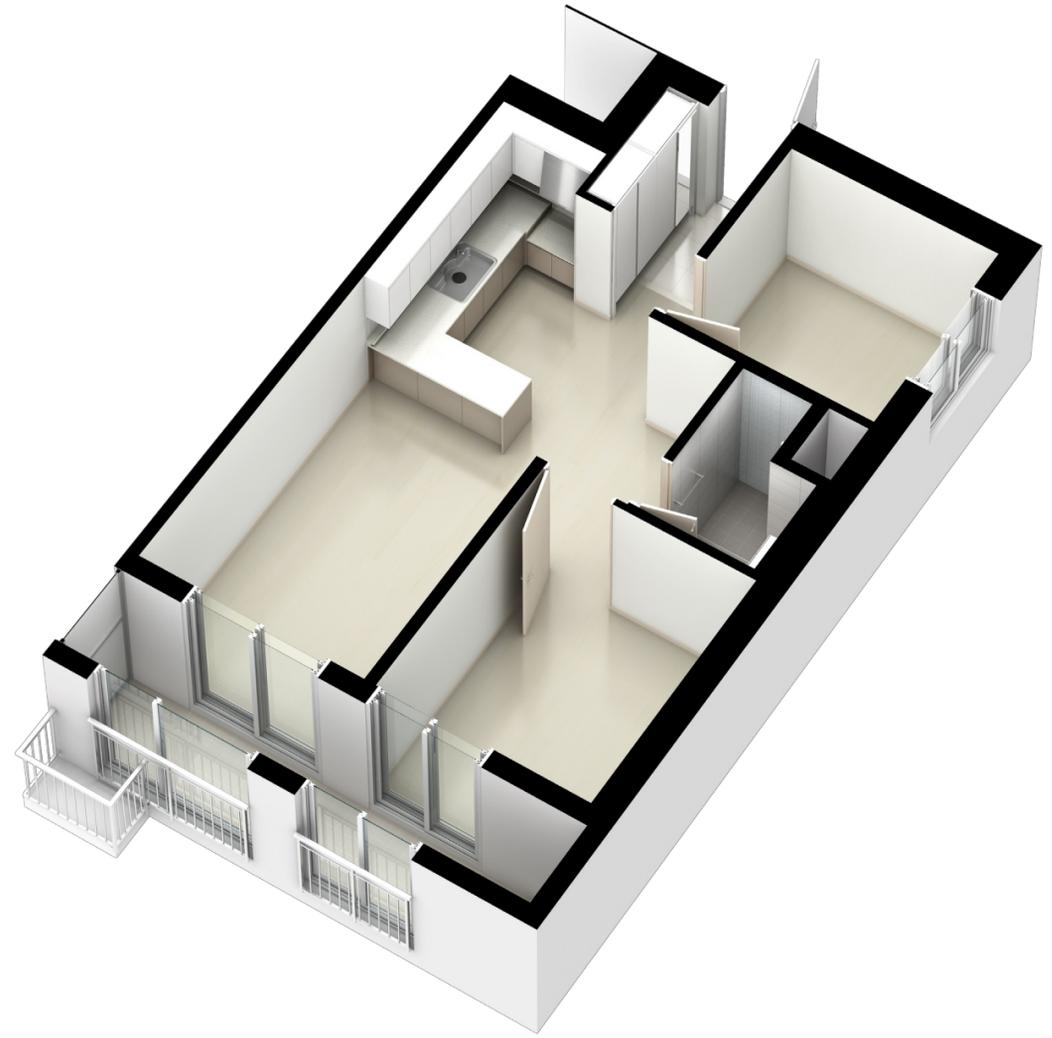
전용면적	47.6900㎡
주거공용면적	28.3610㎡
기타공용면적	5.2428㎡
지하주차장	34.6660㎡
<b>계약면적</b>	<b>115.9598㎡</b>

전용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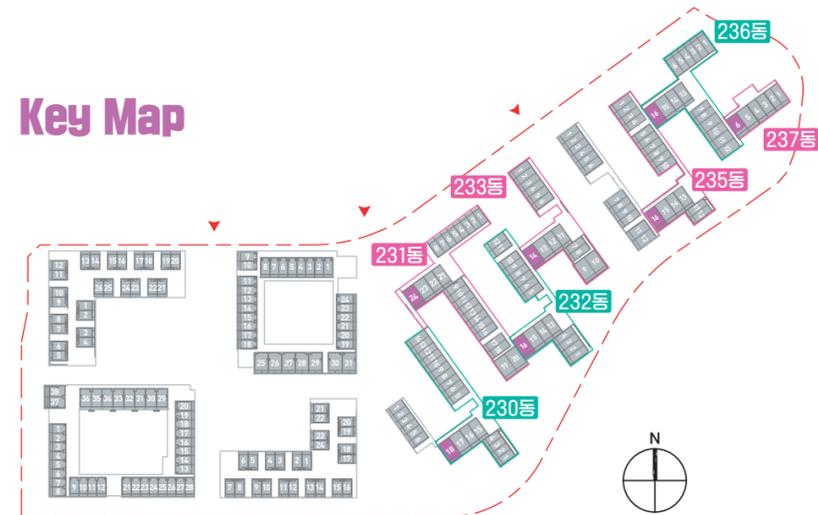
거실	10.20㎡
침실 1	9.52㎡
침실 2	7.49㎡
주방	14.50㎡
욕실	3.08㎡
현관	2.12㎡
초과발코니	0.78㎡
<b>합계</b>	<b>47.69㎡</b>

서비스면적

발코니	9.00㎡
-----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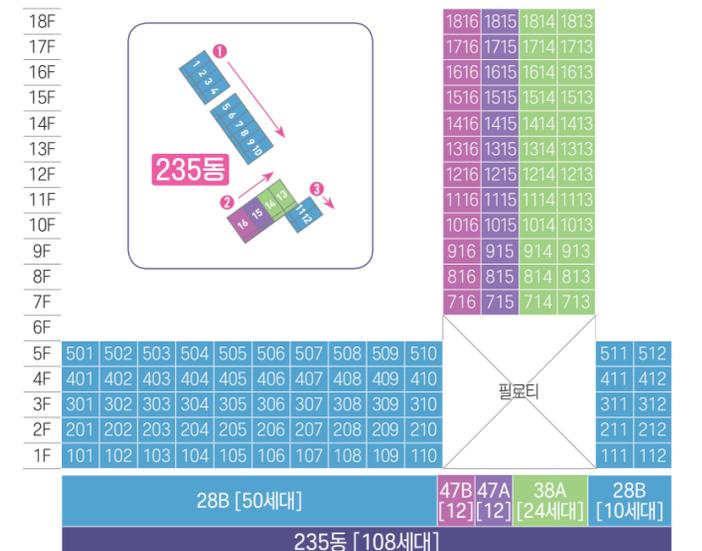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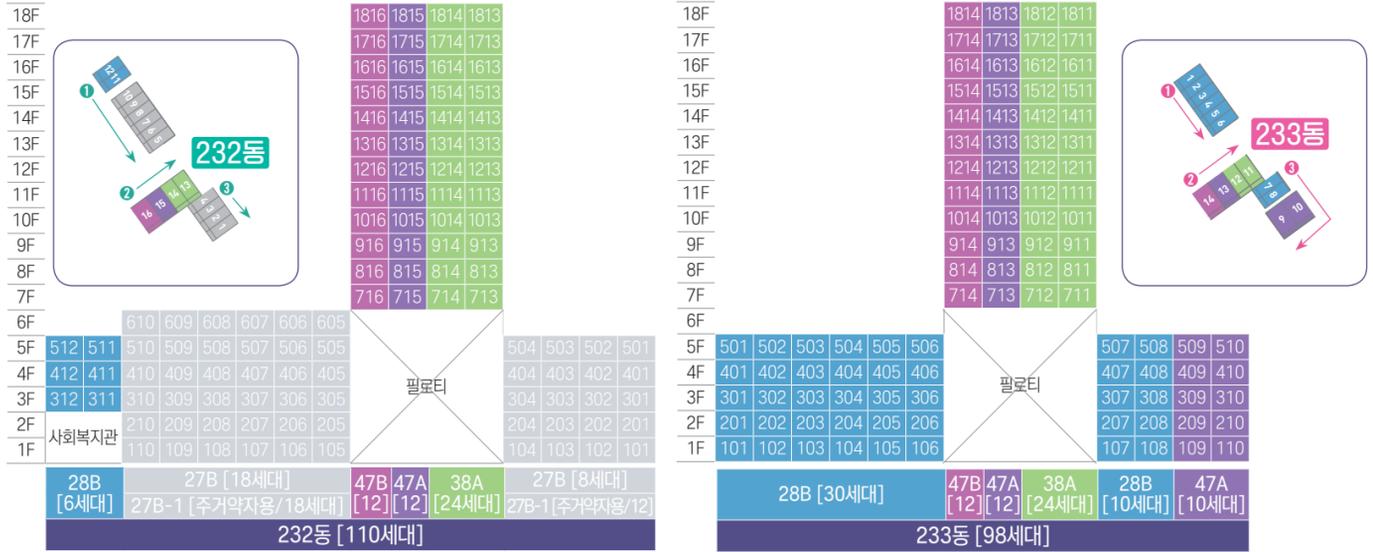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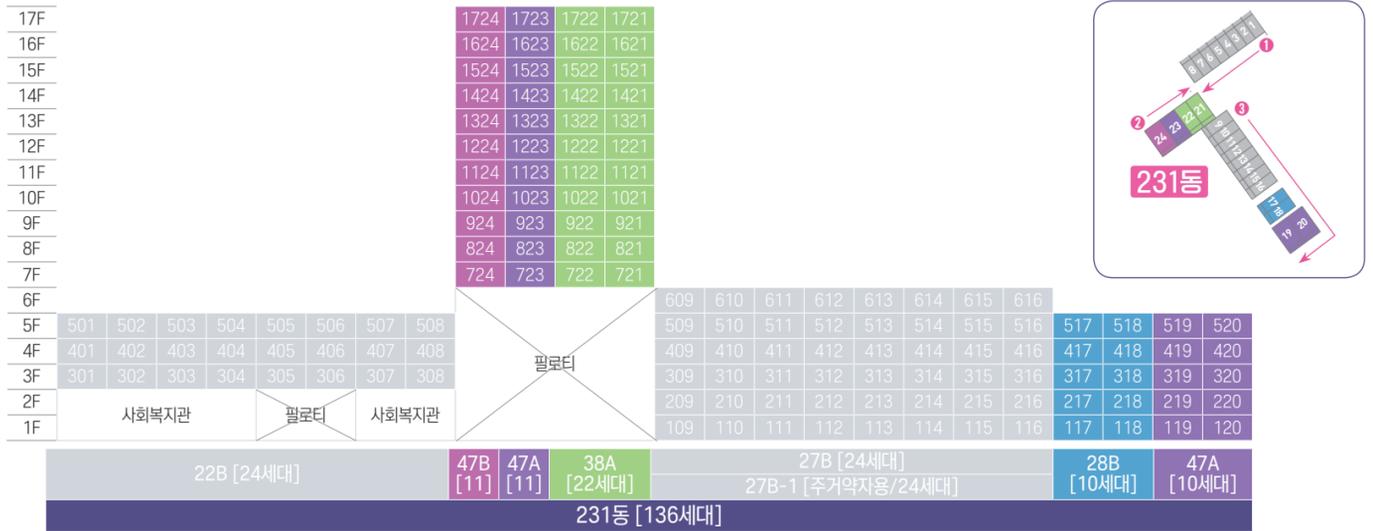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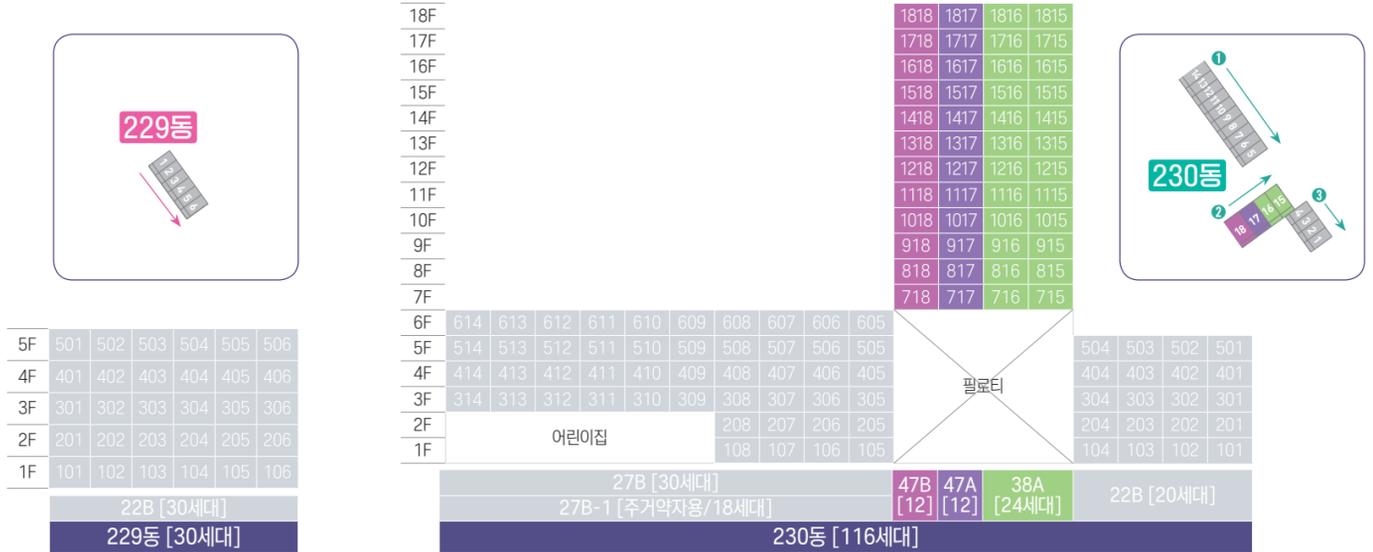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 기준이므로 가구배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 및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선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Plan Map

단지배치도 / 동호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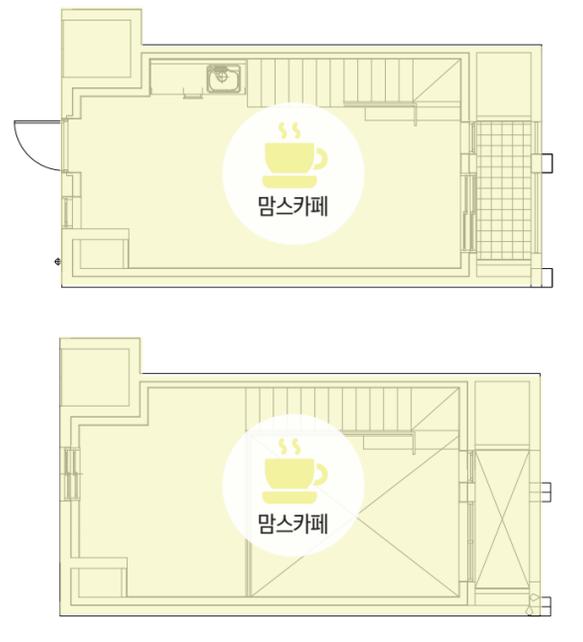
Amenities

기타 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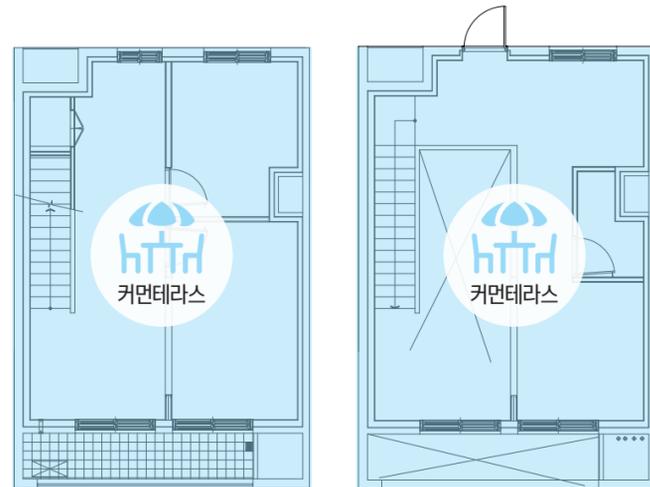
주민공동시설#1



주민공동시설#2



주민공동시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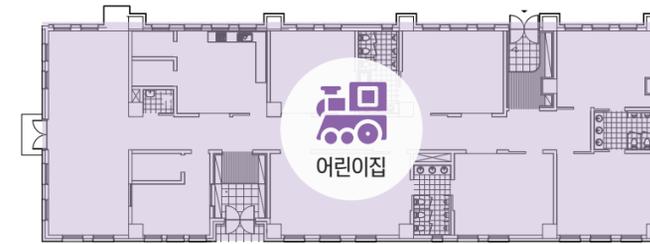
주민공동시설#4



경로당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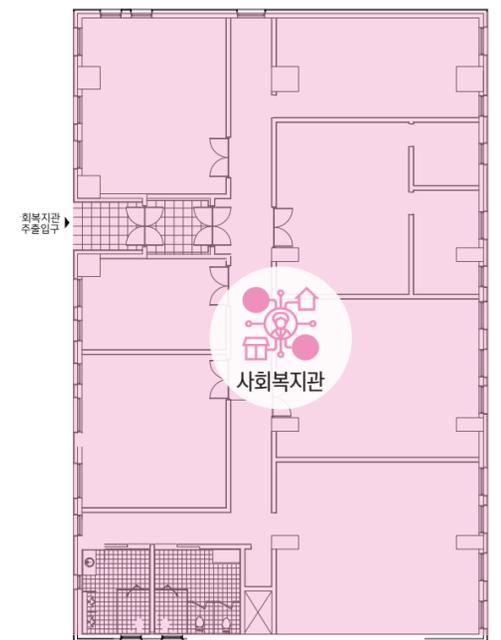
유치원



식당



사회복지관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식당 / 사회적기업



※ 상기 평면도는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Options Overview

## 주요 마감재 내역 시설

**28/37/38 타입 마감재 시설 내역**

항목	시설내역	비고	
현관	현관도어록	레버형	
	신발장	설치	
	현관바닥	자기질타일(400*400)	
	현관등	LED 10W	
거실	비디오폰	7인치 비디오폰	
	거실바닥재	룸카펫(2.0T)	주거약자세대 :4.5T
	거실등	LED 50W	
	거실벽지	실크벽지/발포천정지	
주방	싱크대	설치	
	개수대	설치	
	레인지후드	디럭스형	
	주방싱크수전	싱글레버 혼합수전	
	주방바닥재	룸카펫(2.0T)	주거약자세대 4.5T
	주방타일	도기질타일(400*250)	
침실	침실바닥재	룸카펫(2.0T)	주거약자세대 4.5T
	침실벽지	실크벽지/발포천정지	
	침실문짝	합성수지위 데코시트	
	창호	플라스틱 미서기창	
욕실	욕조	미설치	
	세면기	원형 도기제	
	양변기	투피스형	
	욕조수전	미설치	
	샤워수전	슬라이드바+일반헤드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혼합수전	
	욕신타일	도기질타일(400*250)/자기질타일(200*200)	
	발코니	합성수지제 창	
발코니	발코니타일	자기질타일(200*200)	
	세탁기수전	화초물주기수전겸용	
	세대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위성TV수신 시스템	설치	230동
기타/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1등급	
	CCTV시스템	설치	

※ 상기 마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시공여건상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습니다.

**46/47 타입 마감재 시설 내역**

항목	시설내역	비고	
현관	현관도어록	레버형	
	신발장	설치	
	현관바닥	자기질타일(400*400)	
	현관등	LED 10W	
거실	비디오폰	7인치 비디오폰	
	거실바닥재	룸카펫(2.0T)	
	거실등	LED 25W*2	
	거실벽지	실크벽지/발포천정지	
	싱크대	설치	
	개수대	설치	
주방	레인지후드	디럭스형	
	주방싱크수전	싱글레버 혼합수전	
	주방바닥재	룸카펫(2.0T)	
	주방타일	도기질타일(400*250)	
	침실바닥재	룸카펫(2.0T)	
	침실벽지	실크벽지/발포천정지	
침실	침실문짝	합성수지위 데코시트	
	창호	플라스틱 미서기창	
	욕조	미설치	
	세면기	원형 도기제	
욕실	양변기	투피스형	
	욕조수전	미설치	
	샤워수전	슬라이드바+일반헤드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혼합수전	
	욕신타일	도기질타일(400*250)/자기질타일(200*200)	
	발코니	합성수지제 창	
	발코니	발코니타일	자기질타일(200*200)
		세탁기수전	화초물주기수전겸용
세대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위성TV수신시스템		설치	230동
기타/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1등급	
	CCTV시스템	설치	

※ 상기 마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시공여건상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습니다.



#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08. 07.)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신청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국민임대 신청 안내]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일정 등 개별안내 합니다.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기간 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수정 및 삭제는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 신청 안내】

####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자는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은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 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1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일원 국민임대주택 1,031호

## 2 공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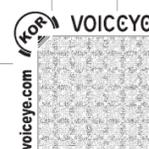
신청자격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우선공급		'20.08.18(화) 10:00~17:00		'20.09.02(수) ~ '20.09.09(수)		(전자계약) '20.12.07(월)10:00~ '20.12.09(수)17:00
일반 공급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	'20.08.19(수) 10:00~ '20.08.24(월) 17:00	'20.08.28(금) (17:00 이후)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218호 임대공급운영2부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20.11.24(화) (17:00 이후)	(현장계약) '20.12.10(목)~ '20.12.11(금) (10:00~16:00) * 동탄2 LH 신혼희망타운 거점홍보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1순위					
	2순위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 사람					
	1순위					
	2순위					
	3순위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신청당일만 가능합니다.(단, 8.18 및 8.24은 17시 전까지 가능)
  -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의 접수는 개별안내 합니다. (추후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별도 안내)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우선공급/일반공급)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순위는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8.07.)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 ②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8.07.) 현재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우선공급 현장접수 : '20.8.18(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일반공급 현장접수 : '20.8.20(목)~8.24(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토·일요일 제외)
    - 장소 : 동탄2 신혼희망타운 거점홍보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 인터넷으로 신청접수 이후 서류제출대상자발표일(8.28 금 17:00 이후)에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고문 (7.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단, 2020.09.09(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에 별도 개시됩니다.

## 3 임대대상 및 조건

### ■ 임대대상

공급형	세대 당 계약면적(m <sup>2</sup> )				합계	공급호수			해당동	건물구조 / 난방방식	입주 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기타공용	주차장							
28A	28.06	16.6871	3.0847	20.3969	68.2287	157	133	24	225, 227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 지역 난방	'21.11 (예정)
28B	28.13	16.7288	3.0924	20.4478	68.3990	204	173	31	231, 232, 233, 234, 235, 236, 237		
37A	37.82	22.4914	4.1577	27.4915	91.9606	98	83	15	227		
37B	37.99	22.5925	4.1764	27.6151	92.3740	20	20	-	226		
37B-1 (주거약자용)	37.99	22.5925	4.1764	27.6151	92.3740	48	-	48	228		
38A	38.29	22.7709	4.2094	27.8331	93.1034	210	178	32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46A	46.78	27.8199	5.1427	34.0045	113.7471	54	46	8	225		
46B	46.86	27.8674	5.1515	34.0627	113.9416	50	43	7	226, 228		
47A	47.69	28.3610	5.2428	34.6660	115.9598	108	92	16	230, 231, 232, 233, 235, 236, 237		
47B	47.69	28.3610	5.2428	34.6660	115.9598	82	70	12	230, 231, 232, 233, 235, 236, 237		



■ 임대조건

공급형	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계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8A	14,863,000	2,972,000	11,891,000	166,240	(+)19,000,000	33,863,000	71,240
					(-)10,000,000	4,863,000	191,240
28B	14,854,000	2,970,000	11,884,000	166,040	(+)19,000,000	33,854,000	71,040
					(-)10,000,000	4,854,000	191,040
37A	27,447,000	5,489,000	21,958,000	225,670	(+)27,000,000	54,447,000	90,670
					(-)20,000,000	7,447,000	275,670
37B	27,360,000	5,472,000	21,888,000	224,720	(+)26,000,000	53,360,000	94,720
					(-)20,000,000	7,360,000	274,720
37B-1 (주거약자용)	27,360,000	5,472,000	21,888,000	224,720	(+)26,000,000	53,360,000	94,720
					(-)20,000,000	7,360,000	274,720
38A	28,511,000	5,702,000	22,809,000	227,340	(+)27,000,000	55,511,000	92,340
					(-)21,000,000	7,511,000	279,840
46A	42,523,000	8,504,000	34,019,000	292,880	(+)35,000,000	77,523,000	117,880
					(-)33,000,000	9,523,000	375,380
46B	42,028,000	8,405,000	33,623,000	289,440	(+)34,000,000	76,028,000	119,440
					(-)33,000,000	9,028,000	371,940
47A	44,053,000	8,810,000	35,243,000	296,520	(+)35,000,000	79,053,000	121,520
					(-)34,000,000	10,053,000	381,520
47B	44,053,000	8,810,000	35,243,000	296,520	(+)35,000,000	79,053,000	121,520
					(-)34,000,000	10,053,000	381,520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 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021.11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 구성원	비고
세대구성원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외국인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 원을 포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 가능함
  -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함**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 50㎡ 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 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1인가구	1,851,603원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li> <li>•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li> </ul>
		2인가구	3,065,866원이하	
		3인가구	3,938,828원이하	
		4인가구	4,358,439원이하	
		5인가구	4,856,848원이하	
		6인가구	5,315,858원이하	
		7인가구	5,774,868원이하	
		8인가구	6,233,879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b>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b>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 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 <b>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b>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사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구분		산정방법
총 자산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b>비영업용 승용자동차</b> 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b>높은 차량가액</b> 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신청방법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PC나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공급 : '20. 8. 18(화) 10:00 ~ 17:00**
- **일반공급 : '20. 8. 19(수) 10:00 ~ 8. 24(월) 17:00**

-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인터넷 신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 '20.8.18(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일반공급 : '20.8.20(목) ~ 8. 24(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토·일요일 제외)
- 방문장소 : 동탄2 신혼희망타운 거점홍보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7.신청서류 참고)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청약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정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임대주택 , 관리번호 : 2020000957**

구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지역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외 가입자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증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정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2020.08.07.) 기준 화성시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초본 상 화성시 거주 시작한 날짜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0.8.28(금)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0.9.2(수) ~ 9.9(수)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발송 (7.신청서류 참고)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본부 임대공급운영2부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0.9.9(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인터넷PC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모집일정을 확인(2.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별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일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이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안드로이드폰 이용고객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주자선정기준 등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공급 형태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계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계	사업지구 철거민	만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 근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군근포로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입주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계	145	48	838	99	29	20	41	10	10	10	10	20	30	20	99	99	27	19	295
28A	24	-	133	16	5	3	7	1	1	1	1	3	5	3	16	16	5	3	47
28B	31	-	173	21	6	4	8	2	2	2	2	4	6	4	20	21	6	4	61
37A	15	-	83	10	3	2	4	1	1	1	1	2	3	2	10	10	2	2	29
37B	-	-	20	2	1	1	1	-	-	-	-	1	1	1	2	2	1	1	6
37B-1 (주거약자)	-	48	-	-	-	-	-	-	-	-	-	-	-	-	-	-	-	-	-
38A	32	-	178	21	6	4	9	2	2	2	2	4	7	4	21	21	6	4	63
46A	8	-	46	5	2	1	2	1	1	1	1	1	2	1	5	5	1	1	16
46B	7	-	43	5	1	1	2	1	1	1	1	1	1	1	5	5	1	1	15
47A	16	-	92	11	3	2	5	1	1	1	1	2	3	2	11	11	3	2	33
47B	12	-	70	8	2	2	3	1	1	1	1	2	2	2	9	8	2	1	25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선정기준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1,322,574원 이하	1,851,603원 이하
2인	2,189,905원 이하	3,065,866원 이하
3인	2,813,449원 이하	3,938,828원 이하
4인	3,113,171원 이하	4,358,439원 이하
5인	3,469,177원 이하	4,856,848원 이하
6인	3,797,042원 이하	5,315,858원 이하
7인	4,124,906원 이하	5,774,868원 이하
8인	4,452,771원 이하	6,233,879원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0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일반공급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공급 선정기준

1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바목)

구분	대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할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사람(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람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사·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 하는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구분	대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은 아래의 순위와 배점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동일인과의 혼인기간은 혼인관계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체기간을 합산함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입주 시 출산·유산, 입양 유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3점</th> <th>2점</th> <th>1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 : <b>1점</b></td> </tr> <tr> <td>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td> <td>3명 이상</td> <td>2명</td> <td>1명</td> </tr> <tr> <td>화성시 연속 거주기간</td> <td>3년 이상</td> <td>1년 이상 3년 미만</td> <td>1년 미만</td> </tr> <tr> <td>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td> <td>24회 이상</td> <td>12회 이상 24회 미만</td> <td>6회 이상 12회 미만</td> </tr> <tr> <td>(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td> <td>3년 이내</td> <td>3년 초과 5년 이내</td> <td>5년 초과 7년 이내</td> </tr> <tr> <td>(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td> <td>만2세 이하</td> <td>만3세 또는 만4세</td> <td>만5세 또는 만6세</td> </tr> </tbody> </table>	구분	3점	2점	1점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 : <b>1점</b>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화성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만2세 이하	만3세 또는 만4세	만5세 또는 만6세
구분	3점	2점	1점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 : <b>1점</b>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화성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만2세 이하	만3세 또는 만4세	만5세 또는 만6세																										
유의사항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범위는 ‘4. 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을 취소함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단,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제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우선공급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장애인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우선공급 배점합산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청자를 선정함
-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 기관추천대상자(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해당기관 통보 명단에 따름
-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 장애정도의 기준은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을 참고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 기준표			
구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50세 미만	만 30세 이상 만 40세 미만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화성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미성년자 기준 : 2001.08.08 이후 출생자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1955.08.07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li> <li>※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li> <li>•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li> </ul>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b>-5점</b>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b>-3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8.07.)</li> <li>•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li> </ul>			

- \* 우선공급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다목, 마목, 바목인 경우를 말함
- \* ⑤, ⑥, 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주거약자용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화성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④ 사회취약계층(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li>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li> </ul>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b>-5점</b>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b>-3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8.07.)</li> <li>•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li> </ul>			

-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b>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b> (세대구성원 범위는 '4. 신청자격'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li> </ul> ② <b>신청자의 형제·자매</b> 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li> </ul>

### 사업지구 철거민등 할증부과 기준

####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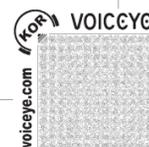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08.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b>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 ※ 모든 제출서류는 <b>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8.07.) 이후 발급분</b> 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b>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b>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인터넷(PC, 모바일) 신청자는 <b>서류제출대상자 발표결과를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하시기 바람.</b> - <b>서류제출기간 : 2020.09.02(수) ~ 09.09(수)</b> ('20.09.09(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b>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발송</b> - <b>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2부 (우:13637)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b> - <b>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b>
---

기본제출서류	내용	부수
구비서류 <b>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b>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별지1호 서식
<b>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b>	• <b>(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b>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별지2호서식
<b>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b>	• <b>(동의방법)</b>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4호서식
<b>자산 보유사실확인서</b>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대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대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b>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b>	별지3호서식
<b>주민등록표등본</b>	• <b>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b> • <b>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b>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b>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b>	1통



구비서류	내용	부수
주민등록표초본	<p>※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p> <p>&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li> <li>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화성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li> <li>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li> </ul> </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p>&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포함)</li> <li>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li> <li>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li> <li>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li> </ul>	1통
임신진단서	<p>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p> <p>&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3자녀 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임신 중인 단독세대주</li> </ul>	1통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6㎡, 47㎡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li> </ul>	1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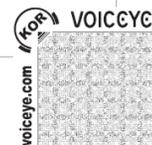
**우선공급대상자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p>&lt;우선공급 라목 국가유공자 등&gt;</p> <p>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p>	기관 추천 대상	국가보훈처
<p>&lt;우선공급 나목 ①노부모부양자&gt;</p> <p>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li>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li> </ul>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p>&lt;우선공급 나목 ②장애인&gt;</p> <p>「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p>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p>&lt;우선공급 나목 ③ 장기복무제대군인&gt;</p> <p>「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p>	기관 추천 대상	국가보훈처
<p>&lt;우선공급 나목 ④ 북한이탈주민&gt;</p>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p>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p>&lt;우선공급 나목 ⑤ 중소기업근로자&gt;</p> <p>「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할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3년 이상)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li> </ul>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p>&lt;우선공급 나목 ⑥ 비정규직근로자&gt;</p> <p>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공급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처 : - 기간제·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p>&lt;우선공급 나목 ⑦ 지원대상 한부모가족&gt;</p> <p>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p>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p>&lt;우선공급 나목 ⑧ 소년소녀가장&gt;</p> <p>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p>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p>&lt;우선공급 나목 ⑨ 만65세이상 고령자&gt;</p>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기본제출 서류로같음)
<p>&lt;우선공급 나목 ⑩ 아동위탁가정&gt;</p> <p>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p>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p>&lt;우선공급 나목 ⑪ 가정폭력피해자&gt;</p> <p>「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p>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p>&lt;우선공급 나목 ⑫ 범죄피해자&gt;</p> <p>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p>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p>&lt;우선공급 나목 ⑬ 탄광근로자&gt;</p> <p>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p>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p>&lt;우선공급 나목 ⑭ 해외거주 재외동포&gt;</p> <p>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한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기관 추천 대상	시·도	
<p>&lt;우선공급 나목 ⑮ 남북피해자&gt;</p> <p>남북피해자</p>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남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p>&lt;우선공급 나목 ⑯ 성폭력피해자&gt;</p> <p>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p>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p>&lt;우선공급 나목 ⑰ 귀환국군포로&gt;</p> <p>「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p>	귀환용시증 사본	국방부	
<p>&lt;우선공급 나목 ⑱ 파독근로자&gt;</p> <p>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p>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주민센터	
<p>&lt;우선공급 다목 다자녀 가구&gt;</p> <p>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p> <p>※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p>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p>&lt;우선공급 마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gt;</p> <p>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에 한함) 중 수급자가 아닌 사람</p>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p>&lt;우선공급 바목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gt;</p> <p>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p>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p>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p> <p>(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p> <p>예비신혼부부</p> <p>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p>	<p>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p> <p>혼인관계증명서(상세) * <b>미혼인 경우도 발급 가능</b></p> <p>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p> <p>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p> <p>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p>	<p>주민센터</p> <p>주민센터</p> <p>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p> <p>주민센터</p> <p>별지5호 서식</p> <p>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p>

**주거약자용주택공급 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기본제출서류로 같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li> <li>·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li> </ul>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6. 입주자 선정기준 참고)**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사회취약계층'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㉕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해당자만 제출)</li> <li>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m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ul>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기본제출 서류로 같음)
④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시·군·구청
- 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주민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기관
㉔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㉕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청약통장 1면 사본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0. 11. 24. 화 17: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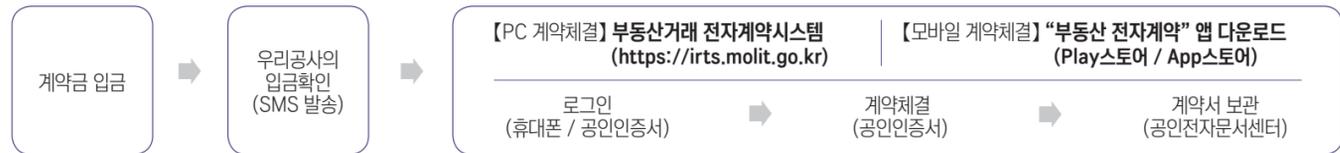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항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 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0. 12.07.(월) 10:00 ~ 12.09.(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절차 】**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비담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 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하셨더라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0. 12. 10.(목)~12. 11.(금)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전자계약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장소 : **동탄2 신촌희망타운 거점홍보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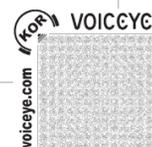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li> <li>계약자 도장( * 본인인 계약시에는 서명가능)</li> <li>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li> <li>※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함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li> <li>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배우자</b>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증명서류</li> <li><b>배우자 외의 자</b>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li> </ul>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li> <li>※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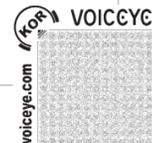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전출, 사망, 이혼, 혼인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 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b>신청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li> <li>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b>중복입주 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li> </ul>
<b>신청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b>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li>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li> </ul>
<b>자동차 등록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li> <li>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0년의 경우 2,468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 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b>지구 및 단지특성</b>	<p>■ <b>단지 외부여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지구 내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교량·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공공청사 설립 계획 등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도로, 주변 아파트 단지 공사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 외부인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센터 등 행정관련 기관),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기흥IC, 기흥동탄IC가 당해 지구 남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할 관청의 시행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동탄JC 인근에 크리에이티비티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를 설치하여 냄새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본 지구 남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원청)이 존치 예정입니다.</li> <li>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열공급 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음식물처리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 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p>■ <b>단지 내부여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임대(1,031호) 및 영구임대(359호)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입니다.(총 1,390세대)</li> <li>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평지붕(예외 : 국민임대 46B는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li> <li>건물의 외관, 조경계획,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문양 및 색상,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및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본인 등 · 호수지정시 동일평형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일부 복층세대 및 저층동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명칭 · 동표시 · 아파트 문양 · 비로고 · 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건물외부, 주변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1층 및 저층부 일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내 보안등, 가로등의 설치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1~3층 등 저층부 세대는 복도 사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수 유입 및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b>지구 및 단지특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보관대가 필로티 밑 또는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선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 일부 동의 1층 일부는 필로티로 시공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보도 · 조경 ·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 주방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연결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 또는 경사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 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시공구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단지출입구,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도로는 고저차 및 단차여건상 도로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경사도가 급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전면 ·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주차대수는 총 1,343대입니다.(아파트 : 1,335대, 상가 : 4대, 유치원 : 4대)</li> <li>·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 입니다.</li> <li>·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하에는 우수저류조,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및 지하주차장 등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는 덮개가 없으며, 트랜치 내부는 구배가 없어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부에 환기창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지배치도 참조)</li> <li>· 배수펌프가 아파트 PIT층에 설치되고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가 PIT층 및 옥상층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종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229동, 234동 및 각 동 일부 계단실 제외)</li> <li>·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배치상 동별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우수유입 및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일반 주차장, 경형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전기차 주차장이 혼합배치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 등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li> <li>· 어린이집 등 단지 내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지자체 위탁운영 등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225동(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주민자치식당, 경비실), 227동(주민공동시설), 229동(유치원), 230동(어린이집), 231동, 232동(사회복지관), 234동(경비실)의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인접세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보관함)가 설치되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접근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225동 생활자원보관소는 필로티 하부(경로당 옆)에 한 개소가 있으나 배치도에서 224~524호에 의해 가려져서 표기할 수 없으므로 동호배치도에서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225동(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자치식당), 229동(유치원), 230동(어린이집), 231동, 232동(사회복지관 주방/식당)의 주방배기는 당해층으로 배출되어 냄새가 인접 세대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경로당에 주방기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에 내부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단지 내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재활용품보관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방,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각종 주민시설은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각종 시설물(생활자원보관소, 환기창, 채광창 등) 및 마감재(벽체마감, 옥탑장식물, 물담) 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에서의 소음 발생에 따라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li> <li>· 인접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 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승강기는 관련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설치됩니다.</li> <li>·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출입구와 면하는 교차로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225동~226동 인근)는 신호등을 운영하며, 삼거리 교차로(233동~234동 인근)는 무신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li> <li>· 공공보행도로(225 ,228, 229, 230동 사이)는 보행자 전용도로이며 유사시에 소방차전입용도로 사용됩니다.</li> <li>·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li> <li>· 단지 내에는 상가 및 아파트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이 설치됩니다.</li> <li>· 무인택배보관함은 225동 경비실옆 택배보관실, 225동 관리사무소 옆, 227동 출입구 인근, 234동 경비실 옆 무인택배실에 설치됩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226,228,229,234동은 제외 됩니다.</li> <li>•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이 설치되어 전기실 근접동(231동, 사화복지관)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 시공됩니다.</li> <li>• CCTV는 관련법령에 따라 단지출입구, 놀이터, 동 주현관, 동 옥상출입구, 승강기 내부,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li> <li>• 일부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230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 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li> <li>•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1등급이 적용되는 단지입니다.</li> <li>•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며, 230, 231, 235, 23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관련기관(KT, SKT, LGU+) 협의 후 전파감도측정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복도 난간 및 옥상난간은 외부 강풍시 울림으로 인한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동연결 복도 및 데크는 지붕이 시공되지 않으며 우기, 동절기 우수유입으로 인한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벽체 및 천장, 주동 외부벽체 등은 구조적 연결로 인한 EJ(Expansion Joint)가 시공되며, 해당부위의 마감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li> </ul> <p><b>■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3~18층 규모입니다.</li> <li>•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li>•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마감재의 디자인 특성(색상, 패턴, 재질 등)은 하자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팜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및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의 경우 폭, 높이, 전기용량 및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li> <li>•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li> <li>•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복도,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가구(주방가구, 신발장, 욕실장, 책상 등) 설치부위의 비도출면(바닥, 천장, 벽체)의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분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li> <li>•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됩니다.</li> <li>• 에어컨 배관구는 전 타입 거실 상, 하부/ 발코니 하부에 각 1개소씩 설치됩니다.</li> <li>• 에어컨 실외기 공간은 발코니 난간 외부에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은 조립식욕실(UBR)로서 충격에 취약하므로 사용 시 충격을 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li> <li>• 욕실에 AD/PD가 위치하여 욕실 및 인접실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li> <li>• 발코니는 단열재가 설치되고 수성페인트 마감이 적용되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li>• 발코니창호 손잡이는 잠금기능이 없는 제품으로 설치됩니다.</li> <li>•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통기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li> <li>• 발코니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일부세대 발코니 세탁기 위치 상부에 세대환기시스템 장비가 설치 예정입니다.(국민임대 46B는 1층 화장실 천정)</li> <li>• 발코니 조명기구는 전층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국민임대 46B 제외)</li> <li>• 발코니 선반은 접이식 선반이 설치되며 과도한 중량물 사용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세탁기 전원용 콘센트과 환기 유니트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국민임대 46B 제외)</li> <li>• 모든 세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시공되지 않으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비상탈출구(세대칸막이)가 설치되며, 부수고 탈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조명기구는 LED램프가 적용됩니다.</li> <li>•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TV수구, 인터넷수구 등의 배선기구 위치는 변경이 불가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내 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신발장 맞은편에 매입 설치됩니다.</li> </ul>
<p><b>지구 및 단지특성</b></p>	<p><b>■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되거나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선편 학교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학교신설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경기도 일반회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 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초등학교는 ‘18.9 개교한 다원초에 배정될 예정이며 화성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중학교는 동탄중, 청계중, 다원중, 한백중, 이산중 등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화성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화성시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고등학생은 택지지구내 학교[한백고, 동탄중앙고, 이산고, 창의고(구 신리고), 정현고, 서연고]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역 또는 수원시(평준화지역)도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b>■ 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합니다.</li> <li>•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주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부지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li> <li>•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ul> <p><b>지구 및 단지특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태이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배치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모형,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팜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li> <li>•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li>•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 </ul>
	<p><b>기타사항</b></p>

관련항목	유의사항
	<p><b>■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되거나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선편 학교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학교신설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경기도 일반회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 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초등학교는 ‘18.9 개교한 다원초에 배정될 예정이며 화성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중학교는 동탄중, 청계중, 다원중, 한백중, 이산중 등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화성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화성시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고등학생은 택지지구내 학교[한백고, 동탄중앙고, 이산고, 창의고(구 신리고), 정현고, 서연고]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역 또는 수원시(평준화지역)도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b>■ 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합니다.</li> <li>•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주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부지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li> <li>•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ul>
<p><b>기타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태이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배치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모형,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팜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li> <li>•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li>•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 </ul>



##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소음	★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전용부분	★
공용부분	★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에너지 성능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지붕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지역난방)

### 4)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홀내트위크 종합시스템	★
방법안전 콘텐츠	★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로 해당 등급 표시

##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화성동탄2 A4-2BL	한국토지주택공사	<b>건축, 토목, 기계, 조경</b> 신동아건설 금호산업(주) <b>전기, 통신</b> (주)현대에너지 주식회사 이에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유텔	-	(주)신화 F.E.ONE

##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 분	항목	시설내용	신청대상
현관	마루굽들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 분	항목	시설내용	신청대상
현관	마루굽들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령제후유증환자를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령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2020.12.10(목) ~ 2020.12.11(금)**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0.12.11(금) 이내'여야 함)
- \*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LH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2부 "화성동탄2 A4-2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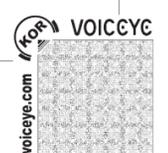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아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 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공품(일시금으로 받는 공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 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금융자산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총 자산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2부**

문의처	전 화	전국 대표전화 1600-1004(평일 09:00 ~ 18:00)
	인터넷	-LH청약센터 (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마이홈포털 ( <a href="https://www.myhome.go.kr">https://www.myhome.go.kr</a> )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 C : LH 청약센터(<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li> <li>•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li> </ul>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8. 07.**

